

정보보호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운영내규

2007년 9월 1일 제정
 2011년 3월 1일 개정
 2019년 12월 1일 개정
 2021년 3월 1일 개정
 2022년 11월 1일 개정
 2023년 1월 1일 개정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

-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본교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학칙 정보보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 시행세칙에서 정한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용어정의) 통합과정이라 함은 석사 및 박사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과정으로서 석사학위 취득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 제 3 조 (운영유형) 통합과정의 운영유형은 본 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추가로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 제 4 조 (정원) ① 통합과정 정원은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정한다.
 ② 통합과정 제 3(4)학기로 입학하는 정원은 연박사정원 중 해당년도 미선발, 자퇴 및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한 여석으로 산정한다.
- 제 5 조 (선발) ① 통합과정 제1학기에 입학하는 자의 선발은 국내·외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외국 정규학교 16년과정 이수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년 전·후기 입학시험에서 선발한다.
 ② 통합과정 제3학기에 입학하는 자의 선발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2학기 재학 12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5이상으로 취득(또는 취득예정)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 및 7월에 실시하며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선발한다.
 ③ 통합과정 제 4학기에 입학하는 자의 선발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3학기 재학 18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5이상으로 취득(또는 취득 예정)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 및 7월에 실시하며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선발한다.
 ④ 통합과정 3(4)학기로 진입예정인 자가 당해 학기 성적확정 후 선발자격에 미달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 제 6 조 (수업연한 및 학점취득) ①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학점취득은 전공학점 48학점 및 연구지도 16학점(수업연한 단축의 경우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3학기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제1항의 수업연한 및 학점취득 산정에는 석사과정 이수학과와 취득 전공학점 및 연구지도학점을 포함한다.
 ③ 수업연한 4년중 전공학점 48학점 이상과 연구지도학점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수업연한 단축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축범위는 1년 또는 1학기로 하며, 1년 단축은 6학기초, 1학기 단축은 7학기초 정해진 기간에 신청한다.
 2. 단축대상은 6학기 또는 7학기의 전체 평점평균이 4.0 이상이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 7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12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 및 출산

휴학, 기타 대학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 등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석사과정 2학기 이수 후 입학한 학생은 통합과정 입학 전 석사과정 2학기 기간을 포함한다.

제 8 조 (중도포기 및 중도탈락) ①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자로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내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탈락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매학기 학적변동 기간내에 본 대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③ 중도포기 및 중도탈락 학생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석사과정으로 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중도포기 및 중도탈락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사운영내규의 석사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9 조 (학사관리) ①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준용한다.

② 교과과정 이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심사 등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과 본 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사운영내규에 규정된 박사과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제 10조 (외국어시험) 외국어 시험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내규 제6조에 따른다.

제 11조 (종합시험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학점 24학점 이상 취득 및 평균평점 3.0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의 등록 및 교과학점 등은 기이수 석사과정 2학기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종합시험은 본 대학원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12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전공 48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또는 취득 예정자)
3. 연구지도학점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또는 취득예정자)
4. 선수과목 이수자일 경우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또는 이수 예정자)
5.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자

② 수업연한 단축에 따른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전공 48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4.0 이상으로 취득한 자(또는 취득 예정자)
3. 연구지도학점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또는 취득 예정자)
4. 선수과목 이수자일 경우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또는 이수 예정자)
5.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자
6.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 13조 (학위과정 구분) 학위과정 구분은 4학기 이수, 교과학점 24학점, 연구지도학점 8학점 이하는 석사과정, 초과이수 및 취득은 박사과정 학생으로 구분하여, 학기단위로 운영(1학기~8학기)한다.

제 14조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은 제13조에 따라 구분하여 석사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석사과정 학생에 준하여 선발 및 지급할 수 있다.

제 15조 (준용) 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학칙과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본 대학원 시행세칙과 학사운영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라 규정명칭을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운영내규’에서 ‘정보보호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운영내규’로 변경함)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4조, 제5조 개정)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7조 개정)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제 11조, 제12조 개정)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제4항 1호 개정)